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한 수산종자 검사
근거 마련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93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한 수산종자 검사 근거 마련 등	3
2. 수산종자 검사 관련 허위 시료 제공 시 벌칙조항 신설	14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한 수산종자 검사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시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며(안 제32조 제2항),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사유에 안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1. ~ 9. (생 략)

<신 설>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2조제3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 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2조제1항¹⁾은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
하여 출입·조사·품질검사 및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품질검사는 품종의 이종(異種) 혼입 여부·오염도·무게·개수 등
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종(種)의
식별에는 한계가 있음.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
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
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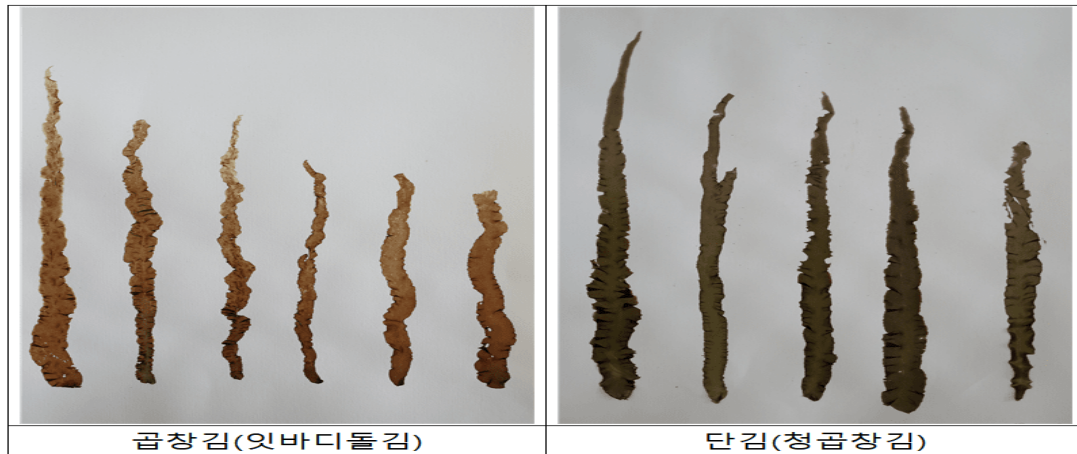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의 기준

대 상		검 사 기 준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표 시를 한 유통수산종자	가. 수산동물종자	1) 이종 혼입 여부 2) 무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나. 수산식물종자	1) 이종 혼입 여부 2) 오염 정도 3)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 국내산 잇바디돌김(곱창김)과 외래종 단김(청곱창김) 비교 >



자료 : 국립수산물과학원

- 생태계 교란 및 국내 김 산업 위축 우려 등의 사유²⁾로 현행법에 따라 이식 승인이 불허된 중국산 단김(외래종)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형태가 유사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유통 단계 이후의 사후적 품질검사만으로는 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안 제32조제2항은 유통 전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종을 식별할 수 있는 검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품질검사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차단이라는 입법목적과 종자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의 유통조사·검사 체계³⁾와 비교해 볼 때 입법

2) (해양수산부 자료) 불법 단김의 국내 반입금지 사유 * 이식승인 불허('15.12월·'21.2월, 수과원)

① (생태계 교란) 외래종의 국내 유입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 또는 교란할 우려가 있어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문제 발생

* 국내(블루길배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 미국(쏘가리,잉어,외래식물) / 이탈리아(푸른꽃게) 등

② (경쟁력 약화) 성장은 좋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단김이 반입될 경우 고품질 국내 김 산업의 위축으로 경쟁력 약화, 어업인 소득 감소 등 우려

* 물김 생산량(천톤) : ('20) 536 → ('21) 548 → ('22) 550 / 수출액(억달러) : ('20) 6.0 → ('21) 6.9 → ('22) 6.6

3)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6조제1항제10호는 안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32조제1항의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도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사유로 규정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32조제2항의 수거·검사 권한이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항의 출입·조사·검사·수거 권한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⁵⁾과 개정안 제32조제2항을 살펴보면,

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현행 제32조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 즉 위법성이 확인된 종자에 대한 생산·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 등 사후적 시정조치인 반면, 안 제32조제2항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전적 선별적 검사이므로 양자는 성격과 발동요건이 달라 중복되지 아니함.

< 현행법과 개정안의 수거·검사 등 규정 현황 >

구 분	현행 제32조제1항	현행 제32조제2항	개정안 제32조제2항
목적	우량수산종자의 생산·유통	위법 생산·판매 종자의 생산·판매 중지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
성격	상시 유통조사·품질검사	위반 확인 후 사후 시정·수거	유통 전 사전 선별검사
대상	수산종자생산업자·유통업자 일반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되는 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종
행위	출입·조사·품질검사, 최소량 수거	생산·판매 중지명령, 수거	최소량 수거·검사 (품종 식별)
시점	유통 단계(상시)	위반 적발 후	유통되기 전
의무	(공무원 수거 권한)	(공무원 수거 권한)	생산업자 시료제공 의무 (신설)

그러나, 현행 제32조제1항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시 최소량만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행위’는 현행법 제32조제1항과 중복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된다고도 볼 수 있음.

개정안의 경우 불법 종자 유통 방지라는 검사의 목적, 수산종자 생산업자에게 부과되는 시료 제공 의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대상종의 한정에 대해 현행 제1항과 입법목적이 다른 측면이 있으나,

수거·검사 행위가 현행 제1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제32조제1항을 개정하여 검사 목적과 시료 제공 의무를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 제32조제1항과 안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거의 거부·방해·기피라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개정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제26조제1항제9호)와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3조제2항제6호⁶⁾)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안 제32조제2항의 수거·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는 허가취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영업정지(안 제26조제1항제10호)만을 규정하고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에 대한 현행 제32조제1항과 안 제32조제2항의 제재수단의 종류가 달라지게 됨.

안 제32조제2항을 현행 제32조제1항으로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안(수정의견)을 채택한다면, 안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현행 허가취소·영업정지(제26조제1항제9호)와 과태료(제43조제2항제6호)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안 제26조제1항제10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26조 및 제32조에 대한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u>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u>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 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2조제3항-----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 ----- ----- ----- <u>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 및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u> ----- ----- ----- ----- ----- ----- ----- -----
---	---	--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해서는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를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하면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 <u>검사</u>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검사</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u>검사</u>----- ----- ----- -.
---	--	--

2. 수산종자 검사 관련 허위 시료 제공 시 벌칙조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안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32조제3항----- ----- -----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검사를 위해 지정된 시료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 분석 시 시료채취 거부·방해·기피한 경우(현행법 제41조제10호7))와 「종자산업법」에 따른 검사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⁸⁾도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과도 동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벌칙 수준은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임.

□ 다만, 벌칙의 구성요건인 “허위로 시료를 제공”이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제 일반원칙 상 처벌 대상 행위의 내용과 모습을 구체적·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면 처벌하려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못하여 처벌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⁹⁾.

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p.756

법제의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해석의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상 처벌하려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고, 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을 하지 못하여 해당 행위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법제 시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처벌범위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 처벌

- 개정안의 “허위로 시료를 제공”은 ① 검사 대상과 다른 종자로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바꿔치기), ② 시료의 성분을 조작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고 고의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는바, 법제처도 개정안에 대하여 고의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유사입법례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 등으로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법 제41조제1호 및 유사 입법례인 종자산업법 제54조제3항제9호의2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32조제2항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지정된 시료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2조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구성 요건에 ‘시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컨대, 안 제41조제9호는 “9. 제32조제1항¹⁰⁾을 위반하여 시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단검 등 불법 수산종자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 전 수산종자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해야 할 행위를 구성요건에 빠짐없이 규정함으로써 처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개정안 수정의견(p.10~13)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수정

수산종자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¹⁾.

문 의 처
02)6788-5419

1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①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에 대하여는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생산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안 32조제2항)
-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안 제26조제1항제10호),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제9호)

② 검토의견 : 보완 검토 필요

-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고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허위로 시료를 제공”이라는 표현은 바뀌치기, 성분 조작 등 어느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고의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유사입법례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 등으로 보완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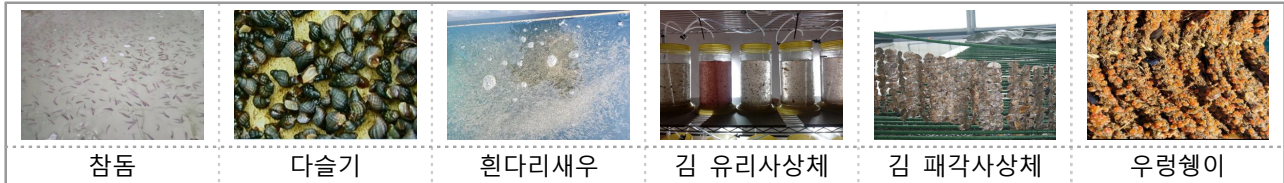
참고 2

수산종자산업 일반현황

□ 수산종자산업 개요

-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 등을 하는 산업

*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하며, 수산동물의 정액·수정란·알·치어·치패, 수산식물의 씨앗·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및 그 밖의 어린 개체



□ 수산종자별 형태

- 수정란 :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된 난자
- 치어·치패 : 알에서 깻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치어, 어류), 아직 덜 자란 어린조개(치패, 조개류·고둥류)
- 중간육성 : 치어·치패의 어린개체 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크기 규정은 없음)



* 종자의 크기 규정은 없으므로 확정된 크기는 아니며, 양식장에 입식되기 전까지 생산

□ 수산종자 생산 및 허가 현황

- (생산현황) '25년 종자생산업 조사결과(1,687개소), 생산량 37,938톤, 판매 금액 4,312억원으로 조사
- (허가현황) '25년 종자생산업 허가현황은 3,291건으로 약 90종을 생산

< 시·도별 수산종자생산업 현황(건수) >

구분	합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291	2	1	27	7	0	49	93	24	242	84	1,849	48	755	110
육상	해수	1,583	2	-	25	5	-	12	19	1	143	26	955	21	264
	내수	287	-	1	-	2	-	37	50	23	49	58	41	26	-
해상	1,421	-	-	2	-	-	-	24	-	50	-	853	1	491	-

참고 3

중국산 단김의 생산·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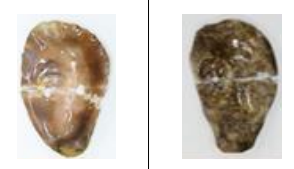
□ 중국산 단김의 생산현황

- 생산량은 연간 약 130~140만톤(FAO, '20)으로 푸젠성·저장성 남부에서 양식
- * 생산가능한 품종으로 **품질이 질겨** 대부분 **스프링**으로 소비(건조품)

□ 불법 단김의 국내 반입금지 사유 * 이식승인 불허('15.12월·'21.2월, 수과원)

- ① (생태계 교란) 외래종의 국내 유입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 또는 교란할 우려가 있어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문제 발생
 - * 국내(블루갈배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 미국(쏘가라잉어·외래식물) / 이탈리아(푸른꽃게) 등
- ② (경쟁력 약화) 성장은 좋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단김이 반입될 경우 고품질 국내 김 산업의 위축으로 경쟁력 약화, 어업인 소득 감소 등 우려
 - * 물김 생산량(천톤) : ('20) 536 → ('21) 548 → ('22) 550 / 수출액(억불) : ('20) 6.0 → ('21) 6.9 → ('22) 6.6

□ 김 종자생산 및 가공김 판매현황

종자생산 (사상체)	유리 사상체 형태	 단김(불법 종자)	 잇바디돌김	 방사무늬김	 모무늬돌김
	유리 사상체 배양				
	분쇄· 판매				
	패각 사상체 배양				
가공김 (판매품)	판매 형태				